

**대한시과교정학회 제61차 정기총회 및  
제56회 국제학술대회 기사제 전시·관리규정**

**2023.10.25(수) ~ 10.27(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한시과교정학회**

# I. 전 시 규 정

## 1. 전시품 반입.반출

### 1) 반입 및 반출시간

- ① 반입시간 : 10월 25일 16:00 ~ 20:00
- ② 반출시간 : 10월 27일 15:00 ~ 20:00 [폐회식 : 14시 40분 진행 예정]
- ③ 전시장 개장시간 : 10월 26일 08:00 ~ 16:00, 10월 27일 08:00 ~ 15:00

※ 반입시간을 초과하여 야간근무 시간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참가업체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 화물차량 출입제한

전시품 반출입 및 설치공사의 자재운반차량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ICC) 하역장까지만 가능

- ### 3) 전시부스 일반부스 제작, 도면, 전시장 내 전기, 소방 등 전시관련 모든 업무는 주최자가 위탁하는 아래 담당자가 일괄 진행할 예정이며, 전시장 관련 질의 및 업무처리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김지영 부장 010-5284-6307 (yh.0514@hanmail.net)

## 2. 부스설치, 유지 및 해체

- 1) 전시장의 전반적인 장치(전기, 조립식 부스, 전시장 통로 카펫, 기타 안내판 등)는 주최자가 맡는다.
- 2) 개개의 부스장치는 각각의 출품자가 해야 하며, 또한 모든 전시자재와 장치는 소방법령 및 건축구조의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대관기관 전시규정을 따른다.
- 3) 부스에 설치할 각 부문의 시공 및 해체상의 제 규칙은 전시규정과 대관기관의 운영규정을 따른다.
- 4) 장치 공사 시 전시장 소방시설의 훼손 및 파손을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 5) 장치 및 철거공사 시 참가업체의 부주의에 의한 전시장 기물의 훼손 및 파손에 대해서는 참가업체의 비용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6) 참가업체는 전시부스 철거 시 배정 받을 당시의 상태로 복구해야 하며, 주최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철거가 완료된 시점까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가 복구한 후 참가업체에 이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한다.
- 7) 장치 및 철거공사 시 전시자재, 장치물 및 전시물 등은 공용면적인 통로에 적재할 수 없으며 참가업체가 배출한 쓰레기 및 부스 내 청결 유지는 전적으로 참가업체의 책임이다.
- 8) 해체시간을 지키지 않고 해체시간 전에 기자재 등을 옮기는 일은 주최자 및 전시장내 모든 참가업체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런 행위가 적발될 시에는 향후 학술대회 전시참여를 제한하며, 기타 전시규정과 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주최자는 향후 학술대회 전시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3. 전시품의 전시와 장치

- 1) 전시장의 전체적인 조화와 미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장치 공사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참가업체는 다음에 기재된 사항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동 사항에 위배되어 주최자가 공사의 변경 및 중지를 요청할 경우, 이에 협력해야 한다.
- 2) 전시행사 성격과 다른 품목을 전시하거나 홍보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참가업체는 사전에 전시 및 홍보품목 등을 주최자에게 알려야 하고 주최자와 협의가 안된 경우에는 전시참여를 제한한다.

## 4. 부스장치 작업시간 및 유의사항

### 1) 공통사항

- ① 부스장치 설치 작업시간 : 10월 25일 08:00 ~ 20:00
  - ② 부스장치 해체 작업시간 : 10월 27일 15:00 ~ 20:00
- ※ **해체 및 물품 반출은 반드시 15시 이후에 시작해야 합니다.**

## 2) 일반부스 (조립식 기본부스)

- ① 조립식 부스를 신청한 업체에게 제공되는 내용 : 부스 칸막이, 전기배선, 콘센트 및 기본조명, 안내 데스크 및 의자 1조, 상호판 및 부스번호판
  - ② 조립식부스를 신청하지 않은 참가업체는 자체 부담으로 기본 전시장치를 포함한 제반 부스장치를 해야 한다.
- ※ 일반부스를 신청한 업체는 온라인 전시업체 참여신청 시 제출한 참여업체 국문 및 영문 상호와 일치하게 주최자가 일괄 제작 및 제공하는 글씨체 등을 사용해야 한다.

## 3) 독립부스

- ① 장치업체 선정  
전시장의 전체적인 조화와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독립부스 참가업체는 대관센터 지정등록 업체에서 시공한다.
- ② 전시장치 자재 및 설치  
가. 장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반드시 사전 방염 또는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전시장 내에서의 방염처리는 금한다.  
나. 전시장 바닥이 손상되었거나 접착제 등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참가업체에서 책임지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다. 구조물 높이는 **4M** 이내로 한다.
- ③ 전시장 바닥은 부스 설치 전 반드시 **파이텍스 설치 작업이 완료**가 되어야하며, 기계나 기타 물품 등을 고정시킬 수 없으나, 사전 작업 서류(신고서 등) 제출 시 해당업체는 주최자와 ICC JEJU 운영 및 시설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를 통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 ④ 참가업체는 전시장 벽면, 기둥 및 천장에 장치물이나 부착물을 고정시킬 수 없다.
- ⑤ 모든 부스의 천장은 개방되어야 한다.
- ⑥ 부스와 부스사이의 복도 위를 통과하는 아치 또는 신청부스 면적을 벗어나는 구조물 등은 일체 설치할 수 없으며, 규정을 어기고 달리 설치할 경우에는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 5. 전시자재의 폐기물의 처리

- 1) 전시기간동안 전시장의 일반적인 청소관리는 주최자가 담당한다.
- 2) 홍보물은 가급적 재활용이 가능한 용지를 사용해야 하며, 코팅된 종이류의 사용은 지양해야 한다.
- 3) 전시장에 쓰레기를 배출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금지되며, 장치 및 철거기간동안 배출되는 쓰레기는 참가업체가 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주최자가 쓰레기를 처리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참가업체에게 청구한다. (1㎡당 10만원)

## 6. 안전규정

- 1) 전시장 내에서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참가업체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이러한 시정조치에 대하여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II. 관 리 규 정

### 1. 전시신청

전시신청을 한 업체의 부스 내에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전시할 경우에는 학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시행위를 한 업체는 본회 주최 전시행사에 참여를 제한한다.

### 2. 전시장 입장

#### 1) 학술대회 참가자

학술대회의 참가 네임택을 착용하고 전시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

#### 2) 참가업체 관람자

주최자는 전시기간 중과 장치 및 철거기간 중 전시장 출입에 필요한 참가업체 관계자 출입증을 온라인 사전 신청분에 한하여 학술대회 당일에 무료로 배부한다. 모든 주최자는 필요한 네임택 수량을 온라인으로 전시업체 등록 신청을 할 때 신청해야 하고 이메일 또는 전화로 추가 요청하거나 현장 발급은 일체 진행하지 않으므로 온라인 신청때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참가업체 관계자들은 이 출입증을 전시장 출입시 항상 패용해야 하며 그렇지 못했을 경우 출입하지 못한다.

### 3. 주차권

#### 1) 일반차량 및 전시품 차량(화물차 및 승합차) 모두 주차 무료입니다.

- 5층에 전시할 경우 : 지하1층 화물전용엘리베이터 앞에 잠시 주차 후 물건을 내려놓고 다시 나와서 야외주차장에 주차해야 됩니다.

- 3층에 전시할 경우 : 로비를 통해 물건을 직접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야외주차장에 바로 세우면 됩니다.

#### 2) 주차 문의처(인포메이션 데스크) : 064-735-1071

### 4. 전시장 관리

#### 1) 참가업체는 학술대회 기간 중 회원들을 위해 아래 전시장 개장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10월 26일 : 08:00 ~ 16:00

- 10월 27일 : 08:00 ~ 15:00

#### 2) 참가업체 관리요원은 정시에 개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참가업체는 주최자가 설치한 모든 시설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파손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원상복구를 아니한 경우에는 주최자가 복구하고 이에 소요된 복구경비 일체는 참가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4) 전시부스 내 발생한 사고는 즉시 주최자에게 통보함과 동시에 참가업체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5. 전시품의 관리

#### 1) 부스 내의 전시품 및 관련 자재 등에 대한 관리는 참가업체의 책임이다.

#### 2) 주최자는 전시품을 포함, 참가업체에서 발생한 손상 또는 도난, 화재 등의 손해에 대해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 모든 작동 가능한 전시품은 참관객에 대하여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4) 통로에 전시품을 야적해서는 안된다.

### 6. 부스 내 행사

#### 1) 참가업체는 전시기간중 학술대회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타 부스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 부스에서 자율적으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과잉된 연출로 타 참가업체와 경쟁을 유발해서는 안된다. 만일, 이와 같은 행동으로 인접 부스의 항의를 받거나 참관객에게 불편을 줄 경우 주최자는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2) 경품추첨, 도우미, 마이크 등의 사용은 주최측에 사전 신청하고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